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25
----------	-------

발의연월일 : 2026. 9. 9.

발 의 자 : 이수진 · 장종태 · 이주희
백혜련 · 손 솔 · 정춘생
이광희 · 박지혜 · 오세희
이연희 · 김남근 · 전은수
허성무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및 제3호 중 “수사”를 각각 “수사, 공소”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 중 “수사”를 “수사, 공소”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수사기관”을 “검사 또는 수사기관”으로,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을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원과 수사기관”을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 전단 중 “조사·심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심리”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를 “(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을 “수사기관, 검사, 법원”으로, “조사”를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를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

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로, “조사 및 심리·재판”을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재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수사과정”을 “수사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수사 절차”를 “형사절차”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때”를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다)”로, “수사에”를 “수사 및 처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피해자를 조사할”을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로 한다.

제34조제1항제5호 중 “수사기관의 조사”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를 “검사 또는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로,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사기관”을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피해자의 권리) 피해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권리가 보장된다.	제6조(피해자의 권리)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수사</u> 및 재판 절차와 보호·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u>수사, 공소</u> ----- ----- --
3. <u>수사</u> 및 재판에 대한 참여를 보장받고 법률조력을 제공받을 권리	3. <u>수사, 공소</u> ----- ----- -----
4. (생략)	4. (현행과 같음)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인신매매등범죄의 <u>수사</u> 및 재판 절차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u>수사, 공소</u> ----- ----- -----. ----- ----- -----.
제11조(교육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신매매등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제11조(교육 등) ① ----- ----- ----- ----- -----

등 피해자 식별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7. 인신매매등범죄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국가기관 종사자

8. (생략)

② (생략)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생략)

② 제1항은 수사기관이 같은 항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법원과 수사기관은 범죄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범죄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범죄피해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인신매매등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

1. ~ 6. (현행과 같음)

7. ----- 수사, 공소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① (현행과 같음)

② ----- 검사 또는 수사기관 --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및 면담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조사를 하는 ---.

③ ----- 법원, 검사 및 수사기관-----

-----.

제18조(진술조력인 지원) -----
-----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피해자”는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범죄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범죄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과 법원은 범죄피해자를 조사하거나 심리·재판할 때 범죄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및 심리·재판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또는 조사·심리-----

-----.

제19조(수사 및 재판절차 등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 검사, 법원 -----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 -----

-----.

② 수사기관, 검사 및 법원은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거나 -----
----- 사실관계 확인
이나 면담 또는 조사 및 심리·재판 -----.

제23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① ----- 수사
과정(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부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친족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하고, 신변보호, 수사의 비공개 등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인신매매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인신매매등피해자지원시설 등 지원단체에 연계하여 수사 절차상 조력 및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생략)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제1항의 불법원인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채무의 불이행 이유를 고소·고발된 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이 인신매매등의 유인·강요 수단으로 이용되

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형사절차-----

-----.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의 무효) ① (현행과 같음)

② -----

--- 때(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송치된 후 공소제기 여

부를 결정하기 전인 때를 말한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수사에
참작하여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제1항
의 채권이 무효인 사실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게 고지하
여야 한다.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일반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6. ~ 11. (생략)

② ~ ⑤ (생략)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
지 등) ① 수사기관은 외국인인
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이 법
에 따른 수사 및 재판 절차상
조력,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지원시설의 이용 및 지원
내용 등의 권리에 대하여 고지
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및 법원은 외국인
인 피해자에게 필요한 통역 및

다)----- 수사 및
처분에 -----.

③ -----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

-----.

제34조(지원시설의 업무)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사실
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
사-----

6. ~ 11.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4조(외국인에 대한 권리의 고
지 등) ① 검사 또는 수사기관
은 외국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할 때--- 수사, 공소 및
재판 절차-----

-----.

② 수사기관, 공소청(광역공소
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번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지청을 포함한다) ----.